

2000. 9.
第55回 臨時會

- 忠州市議會(臨時會) 市政質問 -
答辯 要旨書



農政局長

目 次

순서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	권 혁 부 의원	○ 달천천의 유지관리 계획은? 조정지댐 구역인 달천교에서 탄금교간 간이 뉘시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바 유료로 뉘시터를 조성하여 청결하게 하천을 유지·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축 산 과
○	하 성 대 의원	○ 타지역에서 충주지명을 이용한 사과박스를 제작판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것인가?	농업정책과
○	김 원 석 의원	○ 2000년도 개량물꼬 읍·면·동별(개인별) 신청내역과 보급실적은? ○ 2000년도 수도작에 지원된 방제농약 읍면동별 (약제, 약명별)보급실적은?	농업생산지원과
○	김 남 중 의원	○ 신품종인 찹쌀보리는 2모작이 가능한 품종으로 단보당 수익성이 매우 높아 많은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신니면 관내에 15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바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농업생산지원과
○	김 무 식 의원	○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내역과 대책 및 관련전문기관에 피해액 산출의뢰 내역은?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과

순서	질문의원	질문요지	비고
○	이 학 영 의원	<p>○ 정부에서는 농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의 보조금60%를 중지하고 70%음자에 자부담30%로 전환하고 보조20%음자70%에 자부담10%로 추진하던 쌀전업농에 보조금도 음자금으로 전환하고 음자70% 자부담30%로 되었고 생산유통지원사업도20%의 보조금이 없어지고 음자80%자부담20%로전환이 되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집권하면 농가부채까지 탕감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농촌에 지원하는 보조금제도를 폐지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WTO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부활과 보조금증액 지원이 요구되는데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농민과 연대하여 정부에 농업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p>	<p>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과 축산과</p>
○	김 대 식 의원	<p>○ 국립공원 추가편입,체척,지구조정(밀집지역-자연취락)에 대한 추진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p> <p>○ 가축방역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케슬병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었나? - 구제역 약품선정은 적절했는지? 또한 구제역예방 접종과 관련 공문서 허위조작의 경위,이유,처리계획은 무엇인지? 	<p>산림복지과 축산과</p>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권 혁 부 의 원	답 변 공 무 원	농 정 국 장
<p><input type="checkbox"/> 질 문 요 지</p> <p>달천천의 유지관리 계획은? 조정지댐 구역인 달천교에서 탄금교간 낚시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바, 유료로 낚시터를 조성하여 청결하게 하천을 유지·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p>			
<p><input type="checkbox"/> 답 변 요 지</p> <p>○유료낚시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저회시에 복합민원 약술신청으로 제기되었으며 유료낚시터 조성은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음.</p> <p>○따라서, 위 지역은 충주호 수상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향후 관광지개발시 기득권의 이해관계 및 분쟁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수면을 관리하는 부서 및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수면사용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p> <p>○또한 수질환경보전법상에도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이므로 깨끗이 보전되어야함에 유료낚시터 개발은 어려운 실정임.</p>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하 성 대 의 원	답 변 공 무 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타지역에서 충주지명을 이용한 사과박스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 변 요 지

○ 현 황

• 제작판매장소 : 원주농수산물도매시장내 (주)합동청과

• 제작경위

금년부터 원주도매시장에서 나무상자반입 과실은 경매불허 방침을 결정한후 원주로 납품하는 “충주사과사랑회” 송종근의 25농가가 위 청과회사에 제작을 의뢰하면서 발생함.

- '99년도:10,000개 - 2000년도:25,300개 (공히 15kg단위 비규격 박스)

※원주도매시장충주사과 점유율 : 원협공판장(50~60%), 합동청과(80~90%)

○ 대 책

• 규격미달 포장재 제작의뢰한 26개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로 포장재사용 중지토록 권고

※ 규격미달 포장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검토결과, 규정상 제재조치 사항은 없음.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시 2001년도 사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해당 과수농가에 주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주출장소와 농협 충주시 지부와 협의)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원 석 의 원	답 변 공 무 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 2000년도 개량물꼬 읍·면·동별(개인별)신청내역과 보급실적은?

□ 답 변 요 지

○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논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논두렁보호, 용·배수로 매몰방지 및 농업용수 절약효과와 수위조절을 통한 여름철저온 및 수해 피해예방으로 쌀생산량 증대를 가져옴.

○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규모, 필지당 면적등을 감안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전액 보조지원 사업으로 지역별, 농가단위별 희망량을 신청받아 개량물꼬를 공급하였음.

○ 현재까지 공급내역

(단위:개)

구 분	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공급량	30,058	10,400	8,000	7,358	4,300

※ 참고 : 읍면동별 공급실적1부

○ 금년도 사업신청은 '99년도 1월 농림사업 신청시 소요량 10,000개를 농림부에 신청한 결과 5,000개를 확보 하였음.

○ 읍면동 공급실적은 3차에 걸쳐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4,300개(86%)를 공급하였고 잔량 700개는 반납하였음.

○ 제품선정은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본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임.

답 변 요 지 서

질문의원	김원석의원	답변공무원	농정국장
------	-------	-------	------

□ 질 문 요 지

○2000년도 수도작에 지원된 방제농약 읍면동별(약제,약명별)보급실적은?

□ 답 변 요 지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조분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한 것은 총6회이며 병해충별 방제약제 공급내역은 12종으로서

- 벼 물바구미 방제 : 큐라텔, 후라단입제(보조 40%)
- 중기제초제 방제 : 만냥, 부지논, 풀박사입제(보조 42%)
- 도열병 초기긴급방제 : 빔, 만풍수화제(보조 100%)
- 잎도열병 방제 : 빔, 만풍수화제(보조 60%)
- 목,이삭도열병방제 : 키타진, 후치왕, 오리자입제(보조 45%)
- 벼멸구 방제 : 밧사유제, 비피분제(보조 50%)

○방제시기 및 약제선정은

- 농업기술센터의 예찰결과 행정, 기술센터, 농협등이 참석한 방제협의회를 거쳐 시기 및 약제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 농가 선호도에 따라 자율 변경·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읍면동별 약제공급실적 : 따로붙임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남 중 의 원	답 변 공 무 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신품종인 찹쌀보리는 2모작이 가능한 품종으로 단보당 수익성이 매우 높아 많은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신니면 관내에 15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바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 답 변 요 지

○우리시 보리 파종면적은 63농가 30ha 정도의 규모이며 지난해 가을 파종기때 일기불순과 봄가뭄등으로 생육상황은 좋지 못하였음.

또한 소득면에서도 높은편은 아니었으며 2모작 재배에도 어려움이 있어 우리지역에서는 농가가 재배를 기피하는 작목중에 하나임.

○다만 신품종 찹쌀보리는 2모작(파종적기 10. 5 ~10.15)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아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판단되면 재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무 식 의원	답변공무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내역과 대책 및 관련전문기관에 피해액 산출의뢰 내역은?

□ 답 변 요 지

○충주지역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안개일수가 댐조성전인 75년부터 84년까지 10년간 평균 52.7일로 24.7일이 증가.

댐으로 인한 기상의 변화는 안개로 인한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안개가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피해액을 조사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전문기관에서 조사된 예가 없음.

○다만, '93년도에 안동시에서 안동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만 하였을뿐 결론이 없었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다년간 정밀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야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학계의 관심사항으로서 연구과제로만 밝히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95년도 건국대농대 임열재교수의 4명의 연구팀에게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용역을 주었던 예가 있음.

그러나 일조부족에 따른 품질저하나 안개일수의 증가에 따른 병해충발생, 과실착색 불량등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음.

○안개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주는 피해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기술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01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이 학 영 의원	답변공무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정부에서는 농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의 보조금60%를 중지하고 70%융자에 자부담30%로 전환하고 보조 20%융자70%에 자부담10%로 추진하던 쌀전업농에 보조금도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융자70% 자부담30%로 되었고 생산유통지원사업도20%의 보조금이 없어지고 융자 80% 자부담20%로 전환이 되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집권하면 농가부채까지 탕감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농촌에 지원하는 보조금제도를 폐지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WTO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부활과 보조금증액 지원이 요구되는데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농민과 연대하여 정부에 농업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요 지

-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사업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신 점은 충주시 농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농림사업중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정부정책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답 변 요 지 서

질문의원	김대식의원	답변공무원	농정국장
------	-------	-------	------

□ 질 문 요 지

- 국립공원 추가편입, 제척, 지구조정(밀집지역-자연취락)에 대한 추진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 답 변 요 지

○지구조정 현황

- 충주시 상모면 사문리(1,517km) 추가로 편입
-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점말부락 자연취락지구 지정(89,200㎡)

○지금까지 추진 상황

- 7.18일 “환경부장관 및 국립공원공단이사장”방문 : 재조정 건의
- 7.24일 “충북도 환경과”를 방문 : 국립공원 추가편입 부당설명(시2, 리장2)
- 7.28일 충북도지사 : 지역주민 반대서명 첨부 시장 공문 발송
- 7.29일 “환경부자연공원과” 방문 :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안) 시의견 제출
- 8. 2일 “환경부” 방문 : 사문,석문리장외 4인 재조정 건의
- 8. 4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명의 공문발송 : 계획변경안 조정건의
- 8.28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책협의회 구성 : 환경부와 국립공원전국대책위에
공문 발송

○향후계획

-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지역별 공청회 개최시 항의 방문
- “환경부”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설득하여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답 변 요 지 서

질 문 의 원	김 대 식 의원	답변공무원	농 정 국 장
---------	----------	-------	---------

□ 질 문 요 지

○ 가축방역에 대하여

- 뉴캐슬병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었나?
- 구제역 약품선정은 적절했는지?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 공문서 허위 조작의 경위, 이유,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 답 변 요 지

○ 뉴캐슬병은 닭에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감염시 90%이상 폐사되는 급성전염병으로 특히 환절기에 전파속도가 빠름

○ 금년 우리시에서는 살미1농가, 상모3농가에서 발생된 적이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서 발생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즉시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실시와 가축의 이동을 금지토록 고시·조치하고 환축의 격리 및 폐사축 메물조치, 부락입구 방역 초소 설치와 소독을 실시 하였음. (5. 23일 발생, 5.31일 종료)

시에서는 방역차량으로 발생부락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관내 4개 부화장에 예방백신 접종실시 여부를 확인한 바 이상 없음.

(발생농가는 충남 부화장에서 병아리 구입)

○ 또한 양계농가에 대하여 2~3차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미실시로 뉴캐슬병이 발생될 시는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할 계획임.

- 구제역 방역약품은 이미 서면답변으로 해 드린바와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권장하는 소독약품을 구입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OIE, 미국농무성, 영국농무성, 호주농무성, 태국구제역센터등에서 권장하는 약제가 다소 상이한 점은 있었음.

(소독약제 성분별 권장사례는 기 서면으로 답변)

-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 공문서 허위조작의 경위, 이유,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경 위]

· 문제의 발단

가금면 용전리 소재 염소80두를 사육중인 김진모(27세)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접종팀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접종을 하겠다고 거부를 하여 예방약만 전달하여 주고 갔으나 방역팀이 접종을 한 것으로 접종대장에 기록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 CJB에 언론 보도자료를 제보

· 언론보도상의 공문서 허위, 조작 의혹 내용

- 1,2차 예방접종을 현지 시술팀의 시행과정상의 오류, 축산위생연구소와 시에서 취합 과정상의 오류(누락, 착오)가 사실과 달라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보도로 나갔으며,
- 2차 예방접종의 경우 여러 시술자들의 시술비를 평균접종 시술비보다 337% 월등히 많은 시술자의 시술비 일부를 가장 작은 시술자에게 분산 신청한 것이 조작이라는 보도임.

[이 유]

○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시술비는 수의사와 방역요원에게는 지원이 되지만, 공무원과 농가 자가접종자에 대하여는 시술비가 지원이 되지 아니하며, 시술 당시 팀 편성이 혼성으로 구성이 되어 시술을 시행한 예가 많은 바, 지원과 미지원되는 시술자 구분을 정확히 조사 집계되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집계된 경우가 많으며,

○ 공문서 조작에 대하여

예상치 못했던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히 급조성 된 시술자들의 예방접종 시술비 지금은 시작하면서 부터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주어진 같은 시간내에 어느 시술자는 농가에서 예방접종에 협조를 잘 해주어 순조롭게 접종을 마친 반면, 비협조적이거나 양축농가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농가를 설득하느라 고생만 하고 실적은 1/10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구제역 접종기간내내 접종 시술자들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임.

○ 그러나 구제역이 사상초유의 위낙 급박한 상황이라 접종요원들을 일단 설득하여 접종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추진하였고, 시술비 문제는 접종이 종료된 후에 분배 지급하기로 접종자들이 모여 잠정적으로 협의후 결정기로 하였던 사항이었고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었음.

○ 결국 접종요원들의 중론이 최고 많은 1인의 실적을 최저 1인에게 분산하여 공평하게 신청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에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를 함으로서 접종대장상 개인명단은 수정하지 않고 시술비 신청만 분산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처리계획]

- 민원인의 이의제기후 확인한바 사실과 다르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민원인의 주장대로 여사한 사례가 또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언론등에 보도되기전인 8월12일 즉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양측가별로 날인을 받도록 조치하여 8월29일 까지 재집계 하도록 하였으며,
- 8월30일 현재 접종요원에게 재확인 과정을 거쳐 오차를 확인한 바 당초 신청된 시술비가 49,498두에 34,000천원 이었으나, 제조사시에는 24%의 오차가 발견 되었음.
- 앞으로 경찰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시술비를 지급하고자 함.